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모바일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원증명수단 도입에 따라 신분증 사본 보관 업무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모바일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원증명수단 제시의 경우 신분증 사본 보관을 대체하기 위한 신분증명서 서식을 규정하고자 함(별지 제47호 서식)

3.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가.(2)(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